

의안번호	2125789
의 퇴 인	이수진의원
회 답 일	2024. 1. 16.
추계번호	23D4994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0항 신설(위반 등에 대한 조치)	시장등은 제3조, 제3조의2, 제4조, 제4조의2, 제4조의3,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여 그 위반 사실을 알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10항 신설(위반 등에 대한 조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·운영 근거 마련(안 제10조제10항 신설)

- 현행법¹⁾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등"이라 한다)은 광고물등의 허가·신고·금지·제한 등에 관

1) 현행법 제10조(위반 등에 대한 조치) ① 시장등(제3조의2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·도지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광고물등의 허가·신고·금지·제한 등에 관한 제3조, 제3조의2, 제4조, 제4조의2, 제4조의3,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(이하 "관리자등"이라 한다)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1.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
2.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
3. 광고주
4. 옥외광고사업자
5. 광고물등의 표시·설치를 승낙한 토지·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

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③~⑨ (생략)

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,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

- 개정안은 광고물등의 허가·신고·금지·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등이 해당 광고물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그 위반 사실을 알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구축·운영비용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법안 시행 이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시·군·구의 수, 시·군·구별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·운영비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한예슬	오명희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한예슬	02-6788-4831	yeseulhan@nabo.go.kr